

질문 및 답변



삶을 조금은 편하게 해줍니다



EITC는 소득이 \$49,078 미만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올해의 최대 수혜 금액은 \$5,751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통해 연방 세금을 덜 내거나 세금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ITC는 청구서의 지불이나 거주 장소의 개선 또는 어려운 시기를 위한 저축에 도움이 됩니다.

EITC를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즐거워집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www.irs.gov/eitc



EITC란 무엇인가?

EITC(근로소득 세액공제)란 남을 위하여 일하거나 사업을 소유 혹은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EITC를 받으려면, 근로 소득의 금액이 \$49,078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이 세액공제 금액은 \$2부터 \$5,751까지입니다. 금액은 다음에 따라 다릅니다:

- 결혼 유무
- 자녀가 하나, 둘 또는 셋 이상
- 소득의 금액

EITC를 받으려면 납세해야 할 금액이 없고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ITC는 청구서의 지불이나 거주 장소의 개선 또는 어려운 시기를 위한 저축에 도움이 됩니다.

나는 2011년에 EITC에 대한 자격이 있는가?

세액공제 신청에 대한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이나 자영업업을 통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소득 및 총 소득이 다음 미만이어야 합니다:
 - 유자격 자녀(요건을 갖춘 자녀)가 없는 경우 \$13,660 (부부공동신고자는 \$18,740),
 - 유자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36,052 (부부공동신고자는 \$41,132),
 - 유자격 자녀가 두 명인 경우 \$40,964 (부부공동신고자는 \$46,044),
 - 유자격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43,998 (부부공동신고자는 \$49,078).
- 투자 소득(이자 등)이 \$3,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납세자 구분이 부부별도신고자이면 안 됩니다.
- 일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이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부부공동신고인 경우 자신과 배우자에게 유효한 사회 복지 보장 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 부부공동신고인 경우 자신과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일 수 없습니다.
- 부부공동신고인 경우 자신과 배우자에게 유자격 자녀가 있어야 하며, 만약 유자격 자녀가 없다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말에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 미국*에서 반년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누가 유자격 자녀인가?

관계와 나이, 거주지 그리고 부부공동신고 시험에 부합하는 자녀는 유자격 자녀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아들이나 딸, 의붓 자녀, 수양 자녀, 형제, 자매, 이복 형제 혹은 자매, 의붓 형제 혹은 자매, 또는 이들의 후손.
- 연말에:
 - 자신(혹은 공동신고인 경우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나이가 적으며 19세 미만인 경우, 혹은
 - 자신(혹은 공동 신고인 경우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나이가 적으며 24세 미만이고 풀타임 학생인 경우, 혹은
 - 일 년 가운데 어느 때라도 영구 및 전신 불구인 경우는 연령 무관.

- 환급만을 위하여 세금 보고를 했으며 부부 가운데 누구도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 한, 공동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자신과 반 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입양 과정에서 함께 살거나 입양된 자녀는 자신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수양 자녀란 위임 배치 기관이나 법원에 의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를 말합니다.

나의 유자격 자녀가 제삼자의 유자격 자녀와 동일인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EITC나 부양 면제, 자녀 세액공제, 세대주의 납세자 구분, 또는 자녀 및 부양자 부양 비용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이 동일인의 유자격 자녀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 명만이 이러한 모든 혜택에 대하여 유자격 자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자녀를 신청하는 부모 이외의 개인은 그 부모보다 조정 후 총소득(AGI)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 유자격 자녀를 통하여 EITC 등의 혜택을 신청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명 이상이 같은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자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승자결정규칙이란 무엇인가?

승자결정 규칙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부모나 개인이 자녀를 유자격 자녀로 인정합니다:

- 공동 신고를 하는 부모.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녀의 부모이면 그 부모, 혹은
- 두 명모두가 부모이며 함께 공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그 자녀가 더 오래 함께 산 부모, 혹은
- 자녀가 일 년 동안 각 부모와 기거한 기간이 같으며 두 부모가 공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AGI가 더 많은 부모, 혹은
- 어느 부모도 그 자녀를 유자격 자녀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AGI가 가장 많은 개인, 혹은
- 그 자녀를 유자격 자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부모보다 AGI가 더 많은 개인.

유효한 사회복지 보장 번호란 무엇인가?

EITC를 신청하려면 자신(공동신고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은 유효한 사회복지 보장 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 EIC에 나열된 모든 유자격 자녀 또한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SSN은 사회복지 보장국에서만 발급합니다. 이를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 연령 및 신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INS/DHS 허가에 의한 고용에 대해 유효 (VALID FOR EMPLOYMENT ONLY WITH INS/DHS AUTHORIZATION)'라는 문구가 있는 사회복지 보장 카드가 있다면, EITC를 위한 유효한 SSN을 소지하는 것입니다.
-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만 SSN을 발급 받은 경우, EITC의 신청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보장 카드에는 대개 '고용에는 유효하지 않음 (NOT VALID FOR EMPLOYMENT)'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자신 혹은(공동 신고인 경우 배우자)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소지한다면, 그것은 EITC 신청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만약 자녀가 ITIN 혹은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ATIN)를

소지한다면, 그것은 그 자녀에 대한 EITC 신청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또는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은 근로 소득의 몇 가지 예입니다:

- 과세 대상 임금, 급여, 및 팁
- 자영업에 의한 순수입
- 제정법 상의 고용인으로서 받은 총소득

근로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육 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대상의 직원 복지 혜택
- 연금, 위자료, 자녀 지원금 및 저소득 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금(TANF)

전투 지역에 위치하는 미군과 성직자, 그리고 신체부자유 은퇴 소득을 받는 개인에게는 특별 근로 소득 규칙이 적용됩니다.

EITC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액공제의 신청 자격이 있다면, 스스로 그 금액을 계산하거나 IRS에서 계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간행물 596의 근로 소득 세액공제에 나와 있는 요구조건과 계산 용지 및 사례를 사용하거나 www.irs.gov/eitc 사이트의 EITC Assistan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 유자격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 보고서와 스케줄 EIC를 기입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에 의하여 1997년 이후 EITC가 IRS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감소된 경우, 2011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8862 (불허 후 근로 소득 세액공제 신청 안내)를 세금 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무료 안내와 양식은 www.irs.gov/eitc 사이트로 가십시오. 또한, 상호작용식의 웹사이트인 EITC Assistant를 통하여 자격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무료 도움과 세금 보고 작성에 관한 안내는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00-906-9887에 전화하십시오.
- 무료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무료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인 www.irs.gov에서 Free File을 사용하십시오.
- 자격을 갖춘 세금 보고 작성자를 찾으십시오.
- 세금에 관한 도움이나 VITA 위치 안내는 1-800-TAX-1040에 문의하십시오.
- 무료 IRS 간행물과 양식은 1-800-TAX-3676으로 문의하십시오.
- 청각 장애자를 위한 TTY/TDD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 1-800-TAX-4059로 문의하십시오.